

도쿄대학교 외국인유학생 특별 장학제도 요강

2015년3월26일
임원회 승인

1. 본 장학제도 목적
우수한 사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본교에서의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비 외국인 유학생 정의
이 요강에서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란 외국인 유학생(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951년10월4일 정령 제 319 호] 별표 제 1-4로 정하는”유학” 체류 자격을 가진 자)으로서 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 실시요강 (1954년3월31일 문부장관 재정)에 규정된 국비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정부 파견유학생에 속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3. 수혜자 자격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비 외국인유학생 중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수업료 면제 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원칙으로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는 자 또는 수혜 예정자는 제외한다.
4. 장려금 신청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에 서류를 가지고 소속예정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5. 장려금
 - (1) 아래 금액 중 하나를 지급한다.
A종: 월액 200,000엔
B종: 월액 150,000엔
 - (2) A종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B종을 적용하는 경우 부서장이 그 이유를 국제위원회 학생교류 및 숙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3) (2)의 절차는 아래의 15항에서 정하는 할당 인원수 결정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결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A 종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지급 기간
도쿄대학 대학원 원칙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 수업 연한(연구생 기간[최장1년])을 포함).
7. 수혜자 결정
부서장은 아래의 15항에서 정하는 각 부서 할당 인원 범위 내에서 위의 1항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위의 3항에서 규정된 자격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수혜자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부서장은 국제위원회 학생교류 및 숙소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8. 장려금 지급방법
장려금 지급은 재적 확인 후 분기별로 수혜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다.
9. 장려금 정지 및 재개
 - (1) 수혜자가 휴학 또는 한달 이상 결석(한달 이상 일본을 떠날 경우도 포함)할 경우 부서장은 신속히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장려금 지급을 정지한다. 단 휴학을 따르지 않은 유학, 연구지도 위탁, 학술 조사 등으로 본교를 떠날 경우 부서장 및 지도교원이 장려금 지원유지를 인정하고 위원장에게 신청하면 위원장은 장려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 (2) 의 규정으로 장려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사유가 그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서장을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을 재개 할 수 있다.

10. 장려금 지급 폐지

수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서장은 즉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폐지한다.

- (1) 퇴학 또는 전학할 때.
- (2)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 (3) 학업 성적이 불량일 때.
- (4) 연도별 연구성과 보고를 게을리 했을 때.
- (5) 장려금이 필요 없는 이유가 생겼을 때.
- (6) (1)~(5) 외에 수혜자로서 타당하지 않은 사실이 들어났을 때.

11. 장려금 반납

위원장은 위의 10항의 사유로 수혜자 지급이 중단 될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시킬 수 있다.

12. 장려금 포기

수혜자는 부서장을 통해 장려금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 이동 신고

수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기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부서장은 신속히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보고서 제출

수혜자는 학년말에 연구경과 보고서를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할당 인원수 결정 및 배급

- (1) 부서에 할당 인원수는 A종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결정한 할당 인원을 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3) 위의 5항 (3)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B종을 적용하는 경우 할당 인원을 3분의 4를 곱하여 환산한다.
변환 후 할당 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에게 반납한다. 단 부서 부담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할당 인원내 전입 할 수 있다.
- (4) 할당 인원은 4월 및 9월에 배분된다. 수혜 후보자의 부재 등으로 배분된 기간 이후에 재분배를 원하는 부서장은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에 따라 재분배를 인정할 수 있다.
- (5) 각 부서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본 제도에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은 (1)에서 결정한 할당 인원내 상당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기부자 명을 사업 명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쿄대학 외국인 유학생 특별 장학제도(※ 성명 ※ 연구 장려금) 등으로 할 수 있다.

16. 실시 상세

이 요강에서 정한 것 외에 실시하는데 필요한 별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제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04년7월8일부터 실시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0년4월1일부터 실시한다.

부칙

이 개정은 2012년4월1일부터 실시한다.

부칙

이 개정은 2015년4월1일부터 실시한다.